제2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보솜 ,구립 늘사랑, 구립 드보라, 구립 뽄다, 구립 소은, 구립 태진한솔, 보성, 마곡8 열린숲, 마곡10 별솔, 마곡11 나무햇살, 마곡12 온새미어린이집〕

검 토 보 고 서

2021. 4. 2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복 지 위 원 회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보솜 ,구립 늘사랑, 구립 드보라, 구립 뽄다, 구립 소은, 구립 태진한솔, 보성, 마곡8 열린숲, 마곡10 별솔, 마곡11 나무햇살, 마곡12 온새미어린이집〕

검 토 보 고 서

2021년 4월 20일
전문위원 서 선 옥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21 - 33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1년 4월 6일

라. 회부일자: 2021년 4월 6일

2. 제안이유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11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시설개요

어린이집명	행정동	소재지	면적(㎡)	정원
구립 보솜어린이집	등촌제3동	공항대로43길 39, 1106동 1층 6호	131.88	28
구립 늘사랑어린이집	등촌제2동	등촌로 163, 102동 102호	85	20
구립 드보라어린이집	발산제1동	강서로47길 63, 103호	84.4	19

어린이집명	행정동	소재지	면적(㎡)	정원
구립 뽄다어린이집	화곡제1동	강서로17라길 7-8	117	20
구립 소은어린이집	염창동	양천로67길 77, 104동 101호(염창동, 우성1차아피트)	84	19
구립 태진한솔어린이집	염창동	공항대로71길54, 103동 101호(염창동, 태진한솔아파트)	85	19
보성어린이집	방화제3동	방화대로48길 40	380	84
마곡8 열린숲어린이집	방화제1동	마곡서1로 81, 807동 1층 (마곡엠밸리 8단지)	282.55	65
마곡10 별솔어린이집	공항동	마곡중앙1로 72, 1012동 1층(마곡엠밸리 10단지)	272.99	58
마곡11 나무햇살어린이집	공항동	공항대로124, 1103동 1층 (마곡엠밸리 11단지)	205.44	45
마곡12 온새미어린이집	공항동	공항대로140, 1205동 1층 (마곡엠밸리 12단지)	221.69	46

○ 위탁사무내용

–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영유아 보호와 교육, 예산계획 및 집행,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 부모교육 및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

○ 위탁기간: 5년[1)]

○ 수탁자 선정방식: 심의자료 접수 후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 소요예산: 3,155,076천원(연간)[2)]

---

1) 구립 보솜 ,구립 늘사랑, 구립 드보라, 구립 뽄다, 구립 소은, 구립 태진한솔어린이집: 2021. 9. 1. ~ 2026. 8. 31. 보성, 마곡8 열린숲, 마곡10 별솔, 마곡11 나무햇살, 마곡12 온새미어린이집: 2021. 11. 1. ~ 2026. 10. 31

2) 구립 보솜어린이집: 281,347천원, 구립 늘사랑어린이집: 224,641천원, 구립 드보라어린이집: 252,907천원, 구립 뽄다어린이집: 291,455천원, 구립 소은어린이집: 253,018천원, 구립 태진한솔어린이집: 224,401천원, 보성어린이집: 280,970천원, 마곡8 열린숲어린이집: 352,791천원, 마곡10 별솔어린이집: 340,043천원, 마곡11 나무햇살어린이집: 405,770천원, 마곡12 온새미어린이집: 248,455천원

나. 추진일정

○ 2021년 4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계획 수립

○ 2021년 6월: 구립 보솜어린이집 등 6개 어린이집 위탁심사 및 협약체결

○ 2021년 9월: 보성어린이집 등 5개 어린이집 위탁심사 및 협약체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7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0조, 부칙 제3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11개소의 위탁기간이 올해 8월 및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

한 사무이며, 주관부서에서 민간위탁방식이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재위탁 및 변경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민간위탁 대상시설 중 재위탁은 10곳, 변경위탁은 1곳으로(※위탁 용어의 정의 참조), 올해 8월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구립 보솜어린이집 외 5개 어린이집은 6월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마곡8 열린숲어린이집 외 3개 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10월로 종료되어 올해 9월에 재위탁 심사, 보성어린이집은 방화2 종합사회복지관 내 설치된 어린이집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변경위탁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임

<위탁 용어의 정의>
- 신규위탁: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 위 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 가능)

-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사업안내 p20

○ 검토결과, 어린이집 운영은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 경험이 필요한 만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다만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재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 변경위탁은 2개월 이전에 선정 완료해야하므로

추진일정보다 서둘러 심사를 마칠 필요가 있으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의시 어린이집 운영 실적, 원장의 전문성, 향후 운영계획 등 재위탁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참고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19. 12. 3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③ 시설의 위탁에 있어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위탁기간) ① 시설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② 시설의 재위탁은 한 차례만 한다. 다만,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지원한 단체, 개인의 경우 최초 위탁하고 협약 기간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부칙 제3조(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